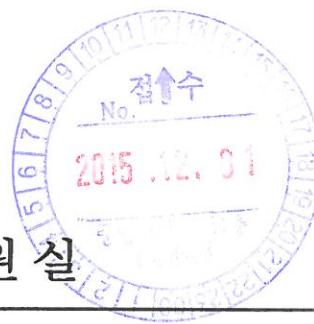


항고장 접수증

사건번호	2015지불항3737호
접수일자	2015년 12월 1일
사건번호	2015형제53370
항고인	금융정의연대외1 (해우 법률사무소)
피항고인	(주)하나금융지주 외 10명

이와 같이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 ① 항고장이 접수되면 우리 청 지불항번호와 담당검사가 정하여진 후 항고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되며,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재기수사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우리 청에서 항고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원처분에 이견이 없을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되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새로운 항고사건번호(고불항)와 담당검사가 정해집니다.
- ③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접수할 때에 함께 또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통합콜센터(02-530-3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 고 장

사 건 2015형제53370호 은행법 위반

항 고인(고발인) 금융정의연대 외 1

피항고인(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외 10

2015. 12. 1.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하나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항 고 장

항고인(고발인)

1. 금융정의연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가 60-3 대월빌딩 4층

대표자 김득의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자 김균, 정현백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김하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전화 : 02) 3472-2711/2, 팩스 : 02)3472-2713

피고발인

1.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9 블루바르드 드 라 뿐лен드, 1050 브뤼셀, 벨기에

(9 Boulevard de la Plaine, 1050 Brussels, Belgium)

대표이사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스피알엘의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대표이사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

2.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2711 노스 하스켈 애비뉴, 스위트 1700, 달拉斯, 텍사스 75204-2922, 미국

(2711 North Haskell Avenue, Suite 1700, Dallas, Texas 75204-2922, USA)

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肯(John P. Grayken)

3.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

(Lone Star Partners IV, L.P.)

워싱턴 몰 1 플로어, 스위트 104, 7 레이드 스트리트, 해밀턴 에
이치엠 11, 베뮤다

(Washington Mall 1st Floor, Suite 104, 7 Reid Street, Hamilton HM 11, Bermuda)

업무집행조합원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肯(John P. Grayken)

4.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Lone Star Fund IV(U.S.), L.P.)

2711 노스 하스켈 애비뉴, 스위트 1700, 달拉斯, 텍사스 75204-2922, 미국

(2711 North Haskell Avenue, Suite 1700, Dallas, Texas 75204-2922, USA)

업무집행조합원 론스타 파트너스포 엘 피의

(Lone Star Partners IV, L.P.)

업무집행조합원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肯(John P. Grayken)

5.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

허드슨 어드바이저 엘엘씨, 2711 노스 하스켈 애비뉴, 스위트
1800, 달拉斯, 텍사스 75204- 2921, 미국
(Hudson Advisor LLC, 2711 North Haskell Avenue, Suite 1800,
Dallas, Texas 75204- 2921, USA)

6. 존 피 그레이肯(John P. Grayken)

킹스본, 파인우드 로드, 버지니아 워터, 서레이, 지유25 4피에
이, 영국
(Kingsbourne, Pinewood Road, Virginia Water, Surrey, GU25 4PA,
United Kingdom)

7.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110111-3352004)

서울 중구 을지로 55(을지로2가)
대표이사 김정태

8. 김 승 유 (前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91, 605호 (서초동, 더미켈란)

9. 김 정 태(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3동 502호(반포동, 레미안파스티지)

10. 주식회사 하나은행¹⁾(110111-0672538)

서울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대표이사 함영주

11. 김한조(前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서울 중구 청구로 64, 105동 303호(신당동, 청구이편한세상)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3370호 은행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검사 김종우는 2015. 10. 28. 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
니다(고발인은 2015. 11. 2. 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아 래

1. 고발사건의 요지

항고인들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대주주인 론스타의 손해를 면책하고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자 향후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가격 절감
이라는 이득을 주기 위해, ① 매매계약서에 면책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론스타
가 향후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겨, 외환은행이 대주주인 론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을 하며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스타에게 향후 자산을 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②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이후에 론스타에 약 413억 원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용인함으로서 피고발인들이 공모한 은행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실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및 제35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2. 인정된 사실

항고인들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검사 김종우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하의 사실관계를 인정사실로 정리하였습니다.

- ① 2011. 12. 13.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연대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림
- ② 2011. 12. 3.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부를 1주당 11,90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1, 2, 3차에 걸친 매매계약이 이루어짐
- ③ 위 1, 2, 3차에 걸친 매매계약서에는 “올림푸스캐피탈, 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된 중재소송에서 최종판결로 인해 만약 외환은행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에 대한 51.02%의 요구에 대해 면책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책임면책조항이 존재
- ④ 2012. 10. 17.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는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위 ①판정금을 지급한 이후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약 41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책임 확정

⑤ 2015. 1. 9.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

검사 김종우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본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그 판단에는 이하와 같은 오류가 존재합니다.

3. 항고 이유 : 수사기관 판단의 오류

가. 관련 은행법 조항의 의미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법 제35조의4 제3의5호는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 매매 · 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은행의 대주주는 은행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은행은 여하한 경우에도 은행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공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① 제2차 중재판정의 결과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지급한 413억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게 무상이나 현저하게 불

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인가(제35조의2 제8항 위반), 또한 ② 대주주는 은행이 그런 거래를 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가(35조의4 제3의5호 위반) 여부입니다.

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

검사 김종우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①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였고, ② 위 국제중재판정 결과 및 그 구상금 지급 과정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책임면책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③ 위 ‘책임면책조항’은 해석상으로도 하나금융지주 측이 우발채무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하였습니다(불기소결정서 제6쪽)

그러나 이것은 은행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지급”이라는 외면적 표양에 대한 실체적 수사 부재

피고발인들은 론스타에 대한 413억 원의 지급이 제2차 중재판정에 따른 부득이한 지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이 중재판정에 대응하던 시기는 론스타와 “면책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지배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중재사건에 외환은행이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슬그머니 포기하

거나 또는 싱가포르 중재재판정에서 기술적인 사유로 중요한 논점을 고의로 배제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의 지배하에 있던 외환은행이 올림푸스 캐피탈이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중재판정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하여 그 책임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음)이고, 이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 외환은행은 법인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마땅히 첫째, 이 결정은 론스타가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론스타에 있으며, 둘째, 설사 법인인 외환은행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그런 결정을 내린 진정한 이유는 법인을 장악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주도한 론스타 측 이사와 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론스타 관계사들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이들에 대해 당연히 외환은행의 부담액에 정확히 상응하는 구상권을 보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외환은행의 분담액은 정확히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권과 상계되어야 하므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적어도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위 첫 번째 반론(즉 최선을 다해서 제2차 중재재판에 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 실천을 주장하지만, 두 번째 반론(즉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이사였으므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대해 가지는 동액의 구상권과 정확히

상계되어 론스타는 일체의 금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주장이나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들은 혹여 외환은행이 제2차 중재판정의 수행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반론 중의 하나인 두 번째 반론을 제기조차 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중재재판정이 이 반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계에 의해 청구권이 부존재하다는 논거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외환은행이 이 논거를 중재재판 과정에서 과연 제기했는지, 또 제기했다면 어떤 형태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번 고발 사건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사 김종우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구상금 지급과정에서 “책임면책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의 오류

검사 김종우는 책임면책 조항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하였고(이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마. 항에서 상세히 반론하겠습니다), 특히 외환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액수인 413억 원은 면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500억 원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면책조항 적용의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면책조항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이 면책조항의 의미를 상세히 살피면, 우선 면책을 부여하는 당사자는 론스타이며, 면책의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리고 면책이 발생하는 조건은 올림푸스 캐피탈 사건에 따른 총 배상금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면책의 내용은 초과분의 51.02%에 대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게 그 부담을 청구해도 론스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반대 해석해보면, 올림푸스 캐피탈 사건에 따른 배상금이 50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금융지주가 그 부담을 론스타에게 요구하는 것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런 내용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합의했다는 뜻은 500억 원 이하는 외환은행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언론에서 이 조항의 취지가 500억 원 이하까지는 외환은행이 배상금을 전액부담하고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대략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413억 원의 지급은 그 금액이 500억 원에 미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는 이 조항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론스타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면책조항이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당연히 이 공동 부당행위는 전적으로 론스타의 책임이며, 설사 외환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사실상의 이사였던 론스타의 책임에 의해 결국 상계될 것이므로 일체의 금전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외환은행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지 못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413억 원을 지급하여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사 김종우의 판단과는 달리 이 조항은 본건 413억 원의 지급에 정확히 적

용된 것입니다.

마. 책임면책조항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는 판단의 오류

기업의 인수 합병 시 우발 채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를 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자가 부담할 것인지, 매수하는 자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
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약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림푸스
캐피탈 사건에 따르는 우발 채무는 다른 일상적 우발 채무와는 대단히 다른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우발채무의 경우 기업 주식의 매각자와 매수자는 모두 우발 채무에 따
른 손해액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유인을 가집니다. 실제 손해액은 결
국 매각자나 매수자 중 일방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림푸스
캐피탈 사건의 경우는 이런 유인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론스타의 이
해상충 때문입니다. 면책조항이 거론하는 우발채무는 법인인 외환은행이 부담하게
될 잠재적 손해액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외환은행 부담 부분을 축소하
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배상책임 총액
중에서 외환은행의 부담 부분이 축소될수록 론스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증
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론스타는 올림푸스 캐피탈 사건에 따른 연대배상 책임
의 내부 분담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최대한 외환은행의 부담
부분을 증가시키려는 자연스런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론스타의 이해상충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본 건 “책임면책 조항”을 통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협상한 핵심 내용은 외환은행에게 얼마의 책임을 떼 넘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 조항은 이 핵심 쟁점에 대해 총 배상책임 액 중 실질적으로 500억 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론스타도 절반 정도 부담한다는 것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상호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전술한 은행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이익을 양도해서는 안 되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런 부당한 일을 은행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거나 설사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도 론스타에 대한 책임은 론스타의 이사로서의 책임과 상계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론스타에게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론스타에게 의무 없이 금전을 지급하도록 매매계약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서로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과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관계자인 피고발인들은 은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검사 김종우는 론스타의 이해상충 상황과 외환은행이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본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이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4. 결론

검사 김종우는 제2차 중재판정의 진행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대해 상계권의 주장 등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책임 면책 조항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의 의미와 론스타의 이해상충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관계자들인 피고발인들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항고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응분의 사법적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한국외환은행) 등기부등본 1통
2. 처분결과 통지서 1통

2015. 12. 1.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 영 국

변호사 김 하 나

서울고등검찰청 귀 중

등기사항 증명서(현재 유효시상)

등기번호	067253	
등록번호	110111-0672538	
상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2015.09.01 변경 2015.09.01 등기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4.01.02 등기

목적
(1)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015.09.01 변경 2015.09.01 등기>
2. 제1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2015.09.01 변경 2015.09.01 등기>
(2) 은행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탁업무, 명의개설대행업무 등 제1항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2015.09.01 변경 2015.09.01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함영주 561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72, 311동 1405호(야탑동, 탑마을)	
2015년 09월 01일 취임	2015년 09월 01일 등기

기타사항
1. 서울 중구 다동 70 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110111-0253817)를 합병 1999년 01월 06일 등기
1. 2004. 4. 22.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2004년 04월 26일 등기
2003년 12월 23일 말소 2003년 12월 23일 등기
1. 합병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합병 2004년 03월 17일 경정 존속기간 만료로 우선주식 26,000,000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2004년 04월 22일 등기
1. 회사분할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설립 2014년 09월 01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5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 2015년 09월 01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증

--- 이 하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등기번호	067253
------	--------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2월01일 12시25분07초

아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10월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 종우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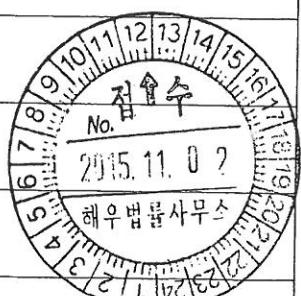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2020.01.08. (장기)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 10월 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론스타매니지먼트 코포에티디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2020.01.08. (장기)2025.01.08.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면 앙내 드 창조하세요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서울법원
청사우체국

요금후납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 일: 2015년 10월 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우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론스타파트너스포엘피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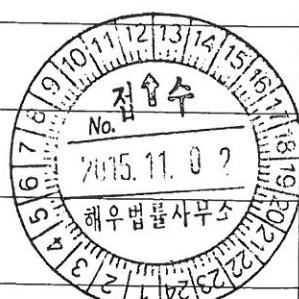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2020.01.08. (장기) 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 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10월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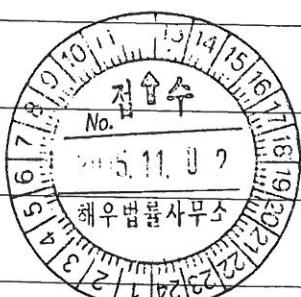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2020.01.08. (장기)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면 안내 등 참조하세요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 10월 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 종우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마이클디토슨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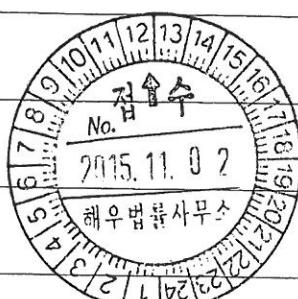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2020.01.08. (장기) 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 10월 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 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인자면 | 졸피그레이케

수리죄명

고수 시호 만류인 (단기)

공수처호 말로인 (단기) 2020. 01. 08. ~ (장기) 2025. 01. 08.

공수처호 말로인 (단기) 2020. 01. 08. ~ (장기) 2025. 01. 08.

공수처호 말로인 (단기) 2020. 01. 08. ~ (장기) 2025. 0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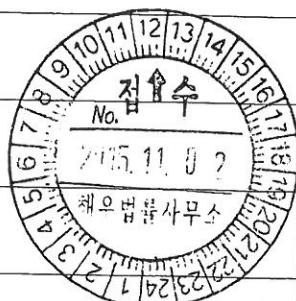
정기수료일 (날짜) 2020.01.08. (~날짜) 2023.01.08.

처분죄명

처분결과

은행법위반

협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항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서울법원
청사우체국

요금후납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칠 청

출력일: 2015년10월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김 종 우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김승유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2020.01.08. (장기)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면 안내 등 참조하세요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서울법원
청사우체국

요금후납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10월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 검사 김종우

(임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김정태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2020.01.08. (장기)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659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 10월 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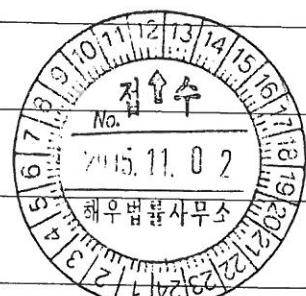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2020.01.08. (장기) 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실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번호: (02) 530-3114

0 6 5 9 4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님



137-07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력일: 2015년10월29일

수신자	해우법률사무소	발신자	검사 김종우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15형 제53370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의자명	김한조			
수리죄명	은행법위반	처분일자	2015.10.28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2020.01.08. (장기)2025.01.08.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은행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2)530-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